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801 발의연월일: 2024. 9. 9.

발 의 자:이수진・민병덕・이연희

박홍배 • 한정애 • 송옥주

서미화 · 최기상 · 김태년

한창민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일정한 요건을 갖추는 경우 단체협약의 당사자인 사용자와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아닌 사람에 대해서도 단체협약의 효력을 확장하여 그 구속력이 미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즉 현행법 제35조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의 근로자에 대한 일반적 구속력을, 현행법 제36조는 하나의 지역에서 종업하는 동종 근로자와 그 사용자에 대한 지역적 구속력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노동형태가 다양화되면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플랫폼 종사자, 프리랜서 등 비정형노동자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노동기본권은 제대로 보장되지 못하고 있어 현행 지역적 구속력 제도를 지역뿐만 아니라 산업·업종에 대하여 공익성이 인정되는 경우 단체협약의 구속력을 확장할 수 있는 제도로 개편하여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단체협약의 구속력의 확대의 유형을 '지역'에서 '산업·지역·업종'으로 확대하여 단체협약이 없거나 불리하게 체결된 경우에도 동일 산업·지역·업종에서 동등한 조건의 단체협약이 적용되게 함으로써 열악한 지위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함(안 제36조).

법률 제 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의 제목 "(地域的 拘束力)"을 "(단체협약의 구속력 확장)"으로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地域에"를 "산업·지역·업종에"로, "勤勞者3分의 2 이상이 하나의 團體協約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는 行政官廳은"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미치는 영향 등 공익성이 인정되는 경우「노동위원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앙노동위원회는"으로, "의하거나 그 職權으로 勞動委員會의 議決을 얻어 당해 地域에서"를 "의하여산업·지역·업종에서"로, "團體協約을"을 "단체협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行政官廳이"를 "노동위원회는"으로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혅 행 개 정 아 第36條(地域的 拘束力) ① 하나의 第36條(단체협약의 구속력의 확 장) ① -----<u>산업·지역·업</u> 地域에 있어서 從業하는 同種 종에-----근로 의 勤勞者 3分의 2 이상이 하 나의 團體協約의 적용을 받게 자의 근로조건에 미치는 영향 등 공익성이 인정되는 경우 된 때에는 行政官廳은 당해 團 體協約의 當事者의 雙方 또는 「노동위원회법」 제2조제1항에 一方의 申請에 의하거나 그 職 따른 중앙노동위원회는-----權으로 勞動委員會의 議決을 얻어 당해 地域에서 從業하는 ----의하여 산업·지역·업 다른 同種의 勤勞者와 그 使用 종에서-----者에 대하여도 당해 團體協約 을 적용한다는 決定을 할 수 -----단체협약의 전부 또는 있다. ② 行政官廳이 第1項의 規定에 ② 노동위원회는----의한 決定을 한 때에는 지체없 이 이를 公告하여야 한다.